

항중 “제6호”를 “제7호”로 한다.

3.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
제12조제1항제9호중 “서울창업보육센터 입주자”를 “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”로 하고, 동조동항제13호를 동조동항제16호로 하며, 동조동항에 제13호 내지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동조제2항중 “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8호 내지 제13호”를 “제1항제1호·제2호·제8호 내지 제12호 및 제16호”로 한다.

13. 유통사업자
14. 건설사업자
15. 관광호텔사업자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주 관 국	사 무 명	근거법령 (위임근거)	수임기관
산업경제국 (소비자 보호과)	7. 제조담배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. 등록 및 변경등록 나.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다. 휴업 및 폐업 신고의 수리 라.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및 관계장부·서류의 확인·열람 마. 과태료의 부과·징수	○ 담배사업법 제13조 ○ 동법 제15조 ○ 동법 제22조의2제1항 ○ 동법 제24조제1항, 제2항 ○ 동법 제29조	구청장

별표의 환경관리실(폐기물시설과)란 중 사무명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주 관 국	사 무 명	근거법령 (위임근거)	수임기관
환경관리실 (폐기물 시설과)	2.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. 재활용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. 휴업·폐업 및 재개업신고의 수리 다. 업무에 관한 보고·자료의 제출명령, 관계서류·시설·장비 등의 검사 라.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마. 과태료의 부과·징수	○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 ○ 동법 제42조 ○ 동법 제43조제1항, 제2항 ○ 동법 제45조 ○ 동법 제63조	구청장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별표중 보건복지국(노인복지과)란 시설명란의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다음에 “ -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”, “ -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”, “ -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”, “ -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”을 신설하고, 같은표 중 문화관광국(체육청소년과)란 시설명란의 시립청소년정보문화센터 다음에 “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”를 신설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(다른 조례의 개정)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별표중 보건복지국(노인복지과)란 사무명란의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다음에 “○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”, “○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”, “○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”을 신설하고, 같은표 중 문화관광국(체육청소년과)란 시설명란의 시립청소년정보문화센터 관리운영 다음에 “○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관리운영”을 신설한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3조제2항중 제1호·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, 동조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5.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 또는 이사장 해임건의 ④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행정(1)부시장이 되고, 위원은 서울특별시의 기획예산실장, 시정기획관 및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각 국장과 공기업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</p>	<p>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</p> <p>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, 동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②투자기관이 장은 다음년도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10월 31일까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 투자기관의 장은 변경된 사항을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⑤시장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기관의 경영목표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기관의 장에게 경영목표를 조정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③위원장은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완료후 그 결과를 투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⑥위원장은 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영실적이 저조한 투자기관에 대하여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사장 또는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를 삭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11조제1항중 “서울특별시중랑·단천·가양 및 난지하수처리사업소”를 “서울특별시중랑·가양 및 난지하수처리사업소”로 한다.</p> <p>[별표6]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[별표6] 하수처리사업소의 위치와 관할구역 (제111조제2항관련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다음 페이지에 계속)</p>
--	---